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3619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594,2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9993)를 제기하였고, 2012.

3. 2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342,9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12. 4.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1. 22.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8,594,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청산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는 상법 제542조, 제245조에 의하여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간주되고 그 때로부터 3년 내에 회사계속결의가 없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